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14
----------	-------

발의연월일 : 2026. 3. 16.

발 의 자 : 김 현 · 최민희 · 김 윤
이재강 · 박지원 · 권향엽
김우영 · 이성윤 · 정진욱
한민수 · 이해민 · 황정아
이주희 · 임미애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10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방송미디어 진흥과 규제 기능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일원화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송미디어 관련 사업의 다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공공기관 및 협회에서 산발적으로 수행되고 있어 방송미디어 분야 국정과제 수행 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2013년 (구)방송통신위원회와 (구)미래창조과학부가 분리될 당시 통신 사후 규제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 규제 및 진흥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하도록 분할되었으나, 통신 분야 공공기관 및 협회 대다수는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로 편입되었음. 이에 따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산하기관 지휘·감독 체계에 혼선이 초래됨은 물론, 온라인 이용자 보호 정책이 파편적으로 추진된

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음.

따라서 시청자 권익 증진과 방송미디어 광고 산업 지원이라는 상호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는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통합하여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음. 통합을 통해 공통 지원 부서의 운영을 일원화하고, 여기서 확보된 전문 역량을 신규 미디어 정책 사업에 집중 투입함으로써,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자 함.

이에 시청자미디어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를 폐지 후 통합하여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을 설립하고, 여러 기관에서 분산 수행 중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소관 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광고판매대행사 업자를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4장 삭제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한 사항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에 필요한”을 “관한”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3조의2에 따른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하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6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을 각각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은”으로 한다.

제4장(제24조부터 제34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2조제3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법은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등 방송광고에 <u>관한</u> 사항과 <u>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u>의 설립에 <u>필요한</u>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송광고 판매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여 방송광고시장 활성화와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 및 다양성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관한</u> ----- ----- ----- ----- ----- ----- ----- ----- -----.</p>
<p>제5조(방송광고의 판매대행) ① (생략)</p> <p>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u>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u> 위탁하는 방송광고에 한정하여 방송광고를 할 수 있다.</p>	<p>제5조(방송광고의 판매대행)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u>방송통신발전 기본법</u>」 제23조의2에 따른 <u>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하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이라 한다)</u>이 ----.</p>
<p>제6조(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①</p>	<p>제6조(광고판매대행자의 허가) ①</p>

(생략)

②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24조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는 「방송문화진흥회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네트워크 지원방안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④ (생략)

제4장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제24조(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의 설립) 광고판매대행, 방송광고 균형발전 및 방송광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25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26조(사무소 및 등기) 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

(현행과 같음)

②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은 -----
-----.
한국방송미디어통신진흥원은 -

-----.

③·④ (현행과 같음)

<삭제>

<삭제>

<삭제>

<삭제>

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③ 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이전등기·변경등기, 그 밖에 공사의 등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자본금 및 주식) ① 공사의 자본금은 3천억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②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공사의 자본금은 주식으로 분할한다.

④ 주식은 기명으로 하고 그 종류와 1주당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28조(임원 등) ① 공사에 임원으로 사장 1명을 포함한 이사 1명과 감사 1명을 둔다.

②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상임이사의 정

<삭 제>

<삭 제>

수는 사장을 포함한 5명으로 한다.

③ 사장은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중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명한다.

⑤ 감사 및 비상임이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

제29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방송광고의 판매대행
2. 네트워크 지역지상파방송사업자와 중소지상파방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방송광고 균형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3. 방송광고제작산업 육성, 광고표준화, 광고효과 측정, 광고유통기반 구축·운영, 광고관련 조사·연구·교육, 공익광고 등 방송통신광고산업 진흥관련 사업

<삭 제>

4. 시청점유율 조사·검증·산정 관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위탁하는 업무

5. 그 밖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산업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제30조(자금의 조달 및 회계) 공사는 제29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자본금과 적립금
2. 제29조의 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3. 정부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
4. 자산운용수익금
5. 국가보조금 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른 방송통신발전기금
6. 그 밖의 수입금

제31조(손익금의 처리) ① 공사는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

<삭 제>

<삭 제>

대로 처리한다.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
까지 이익금의 10분의 1 이상
을 이익준비금에 적립

3. 국고에의 납입

4. 제2호에 따른 이익준비금 외
의 준비금으로 적립

② 공사는 공사의 업무목적 달
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29조와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
할 수 있다.

제32조(비밀누설의 금지)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
었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
다.

<삭 제>

제3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
국방송광고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
다.

<삭 제>

제34조(감독 등) ① 방송미디어통
신위원회는 공사의 업무를 감독
한다.

<삭 제>

② 공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 (생략)
3. 제32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

제42조(벌칙)-----

-----.

1. 2. (현행과 같음)
- <삭제>